

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10-24

대 구 지 방 법 원

제 2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 2023구합24878 취득세부과처분취소
원 고 A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○○
담당변호사 성○○
피 고 ○○시장
변 론 종 결 2024. 7. 18.
판 결 선 고 2024. 10. 17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가 2023. 1. 10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, 농어촌특별세 합계 48,776,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


이 유

1. 처분의 경위

가. 농업회사법인B 주식회사(이하 '이 사건 회사'라 한다)는 2011. 5. 17. 병아리 분양 및 양계업 등을 목적으로 발행주식 10,000주, 1주의 금액 5,000원, 자본금 50,000,000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, 설립 당시 주주명부상 주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.

주주	주식수	지분
원고	5,000주	50%
C	2,000주	20%
D	1,500주	15%
E	1,500주	15%
합계	10,000주	100%

나. 원고는 2020. 12. 31. C, D, E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합계 5,000주(= C 2,000주, D 1,500주, E 1,500주, 이하 '이 사건 주식'이라 한다)의 명의를 이전받아 이 사건 회사의 주식 합계 10,000주(100%)를 보유하게 되었다.

다. 피고는 2023. 1. 10. '원고가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·납부하지 않았다.'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 1,648,762,96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44,952,190원, 농어촌특별세 3,824,620원 등 합계 48,776,81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(이하 '이 사건 처분'이라 한다)을 하였다.

라. 원고는 2023. 4. 7.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청구를 하였는데, 조세심판원은 2023. 7. 18.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.

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, 7, 9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,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100%의 주식을 취득한 과점주주였다. 다만 원고는 당시 농업인이 아니었는바,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일부인 이 사건 주식을 농업인인 D 등 원고의 지인들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, 원고가 농업인 자격을 갖춘 2017. 6. 이후인 2020. 12. 31. C, D, E와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고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회복한 것일 뿐, 이로 인해 원고의 실질 주식 보유 비율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. 즉,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로 인해 원고의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,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.

3. 관계 법령

별지 '관계 법령' 기재와 같다.

4.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

가. 관련 법리

1)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'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.'고 규정하고 있다. 여기서 과점주주란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서 정한 대로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. 그리고 지방세법 시



행령 제11조 제1항은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2)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,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(대법원 2016. 3. 10. 선고 2011두26046 판결 등 참조). 나아가 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와 과점주주의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볼 때, 어느 주식에 관하여 명의상 주주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주주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뿐만 아니라 명의상 주주와 제3자 사이의 관계, 그 주식의 주주명부 등에 명의상 주주 앞으로 등재된 경위 및 목적,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 의사결정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7두38058 판결 등 참조).

또한,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·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,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(대법원 2008. 10. 23.



선고 2006두19501 판결 등 참조).

한편,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,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4.

7. 9.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).

나. 구체적인 판단

1) 위 처분의 경위와 앞서 든 증거들, 갑 제5, 6, 10,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C, D, E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가) 이 사건 회사는 2011. 5. 17. 10,000주의 주식을 발행하여 설립되었는데,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시의 자본금을 모두 자신의 자금으로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예금신탁잔액증명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주금납입대장, 금융거래내역 등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. 또한, 원고와 C, D, E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서 등 명의신탁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.

나) E가 작성한 2024. 5. 22.자 확인서, C가 작성한 2024. 5. 23.자 확인서, D이 작성한 2024. 5. 24.자 확인서(갑 제10호증)에는 "본인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대표



이사인 원고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명의수탁자로서 보유하다가 2020. 12. 31.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환원시킨 사실이 있고, 주식을 신탁받을 당시나 그 후에도 주식 납입대금 및 기타 비용은 본인이 납부한 사실이 전혀 없고, 전액 모두 원고가 지출한 것임을 확인합니다."라고 기재되어 있다. 그러나 위 확인서들은 이 사건 회사 설립일로부터 약 13년이 경과한 이후에야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.

다) C, D, E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. 특히, 원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,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D의 농업인 자격이 필요하였고, 실제로 D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었으며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사내이사로 취임하기까지 하였는바, D은 실제 주주로서 역할을 가지고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.

라)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을 위한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관련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, 회사에 대한 운영권과 주주로서의 권리는 별개의 권리로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C, D, E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점까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,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C, D, E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.

2)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5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10-24

재판장 판사 이○○

 판사 전○○

 판사 유○○ 휴가로 인한 서명날인 불능

 재판장
 판 사



별지

관계 법령

■ 지방세법

제7조(납세의무자 등)

-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「지방세기본법」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(이하 “과점주주”라 한다)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(법인이 「신탁법」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·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)을 취득(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)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44조를 준용한다.

■ 지방세법 시행령

제11조(과점주주의 취득 등)

- ① 법인의 과점주주(제10조의2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(이하 “주식등”이라 한다)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.
-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(이하 이 조에서 “주식등의 비율”이라 한다)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. 다만,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
■ 지방세기본법

제17조(실질과세)

-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·수익·재산·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(名義)



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.

-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·수익·재산·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.

제46조(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)

법인(주식을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)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총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(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)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. 다만,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(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(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)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.

2.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(이하 “과점주주”라 한다).

끝.